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고등학교



CONTENTS

유의사항	3
제4조 처리요령	4
제7조 인적·학적사항	7
제8조 출결상황	16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32
제13조의2 일상생활 활동상황	40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43
제16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91
제19조 자료의 정정	92
제20조2 상업적 이용 제한	94
제20조3 평가관리센터	95

유의사항

고 p.28

사유 | 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 '기관 유형' 작성 방침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2024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¹⁾(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²⁾ 등

1) 기관명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수정 및 신설

2025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¹⁾(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²⁾ 등

1) 기관명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기관 유형)'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 교육청, 대학, 지역사회기관, 기업

<참고>

- 교육청: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포함
- 지역사회기관: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한함
-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운영교에 한하여 기재 가능

제4조 처리요령

해설 고 p.37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반영

2024

항목		입력 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급담임교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자율활동	학급담임교사
	진로활동	학급담임교사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수정 및 신설 2025

항목		입력 주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급담임교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자율·자치활동*(2~3학년은 자율활동)	학급담임교사
	진로활동	학급담임교사
	동아리활동	해당 동아리 담당교사
	일상생활 활동상황** 특기사항	영역별 담당교사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담당교사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급담임교사
독서활동상황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급담임교사

** 특수학교 1학년 재학생 중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적용됨(이하, 해당 문구 생략)

제4조 처리요령

해설 고 p.37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기 단위 과목 편성·운영에 따른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마감일 변경

2024

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 및 학업 중단 학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

신설 2025

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 및 학업 중단 학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

※ **고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2025학년도 1학년부터 학기 단위로 작성·마감해야 함. 따라서,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당해 학년도 8월 31일까지 작성·마감해야 하며 수정 사유 발생 시,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함.**

제4조 처리요령

해설 고 p.38

사유 | 영문 입력 가능 범위의 명확화

2024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수정 2025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단위** 등

제7조

인적·학적사항

훈령 고 p.43

사유 | 학적변동 사유 입력 규정의 명확화

2024

제7조(인적·학적사항)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수정

2025

제7조(인적·학적사항)

④ ‘특기사항’란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제7조

인적·학적사항

훈령 고 p.44~5

사유 | 유급 및 퇴학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

2024

별표 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 12.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19.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따라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수정

2025

별표 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 12.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따라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거나,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19.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사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적변동 범위 명확화

신설

2025

1. 제7조(인적·학적사항)

마. 제7조제4항의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학적변동’이란 자퇴, 퇴학, 휴학, 유급, 조기진급 및 학교장이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적변동 사항을 의미한다.

제7조

인적·학적사항

해설 고 p.47

사유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요건의 변화 반영

2024

다. 유급

-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25

다. 유급

-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거나, 출석일수 부족 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2025학년도 1학년 이후)**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율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2)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된 자는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사유 | 주민등록번호 미부여된 외국국적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법 현행화

2024

① 학생정보

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국적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함.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

수정

2025

① 학생정보

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국적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입력함. 다만,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

사유 | 학적변동 사유에 대한 입력 범위 명확화

2024

③ 특기사항

나. 자퇴·퇴학·휴학·재입학·편입학·복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변동인 경우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입학, 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수정

2025

③ 특기사항

나. **자퇴, 퇴학, 휴학, 유급, 조기진급 및 학교장이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귀국학생 등의 재입학·편입학 시 해외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제7조

인적·학적사항

기재요령 고 p.53

사유 | 귀국학생 등의 학년 배정 시 제출 서류 명료화

2024

④ 기타

바.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6) 귀국학생 등이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에서 유학을 한 경우,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관련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수정

2025

④ 기타

바.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

6) 귀국학생 등이 입학·편입학 시,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와 학년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제출 서류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해외 당사국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유학을 한 경우**,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8.22.)에 따라 **우리나라 학교에**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함

* 목록 위치: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대상 학교 목록

사유 | 한국학교 전출·입 절차 명료화

2024

④ 기타

사. 한국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

- 1)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의 경우 국내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하다.

수정

2025

④ 기타

사. 한국학교 전출·입 처리 방법

- 1)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의 경우 **한국학교에서는 한국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전학확인서를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학부모는 이를 국내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절차는 국내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하다.**

사유 | 소년원학교 등 학적처리 방법에 대한 근거 명확화

2024

④ 기타

카. 소년원학교 등 학적처리 방법

2) 소년원학교 등의 학적처리는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5의 다]를 참조한다.

수정

2025

④ 기타

카. 소년원학교 등 학적처리 방법

2) 소년원학교 등의 학적처리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르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제65조, 제85조를 참조한다.

제8조 출결상황

훈령 고 p.62

사유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일수 증가

2024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수정

2025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별표 8 출결상황

훈령 고 p.63

사유 | 질병 결석 처리 기준의 명료화

2024

2.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정

2025

2.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표 8 출결상황

훈령 고 p.64

사유 |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 출결 처리 방법의 명확화

2024

2.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정

2025

4.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 **출결 처리**

-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생의 출결은 등교수업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별표 8

출결상황

훈령고 p.64

사유 |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규정 재구조화

2024

5.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가.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 활용 수업)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출결·성적을 처리한다.

2) 출결처리

가)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3) 성적처리(중략)

나. 병원학교·원격수업 등(건강장애 학생)

1) 학적처리: 소속 학교(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에 학적을 둔다.

2) 출결처리

가)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위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3) 성적처리(중략)

다. 보호소년 등 위탁교육기관

1) 학적처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학적처리하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65조, 제85조를 참조하여 학적, 출석일수 등을 관리한다.

2) 성적처리(중략)

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중략)...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중략)...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수정

2025

5.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가. 위탁학생의 소속 학교는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출결 상황을 그대로 입력하며, 위탁교육기관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및 위탁교육 운영 방법과 형태에 따라 학생의 출결과 수강 여부를 확인한다.

나. 학생이 수업의 일부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수강하고 일부는 소속 학교에서 수강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과 소속 학교의 수업 일수 및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경우, 해당 학생의 출결을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

출결상황

해설 고 p.71

사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해설 수정 및 재구조화
(원격수업에서 출결과 평가를 개별 항목으로 분리하고 기재요령 내용 해설로 이동)

2024

- 마.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1) 위탁교육이라 함은 법원 또는 교육감의 명에 의해 소년 관련 시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다문화학생 위탁형 한국어학급 포함), 수업을 방송·정보통신매체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받은 교육을 말한다.
 - 2) 사·도교육감에 의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Wee 센터, Wee 스킴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에 의해 학적 및 성적처리를 한다.
- 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1) 병원학교는 3개월 이상 병원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말한다.
 - 2) 원격수업은 3개월 이상 병원입원 또는 장기요양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으로 유급이 예상되는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송·정보통신매체이용교육을 말한다.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교육부의 연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가)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4)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료 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원격수업을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원격수업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정

2025

마.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 1) 소년보호기관별 수업일수 인정 여부 처리는 [참고자료 5] ‘소년보호기관 관련 처리’를 참조한다.
- 2)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보호처분 8호) 기간은 재적학교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중략)

- 7)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전문·심화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도록 한 경우, 해당 학생의 출결을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 학생이 하루 중 일부 교시는 소속교에 출석, 일부 교시는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소속교의 출결상황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출결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일일 출결을 처리해야 함.

제8조 출결상황

훈령 고 p.64

사유 |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지침 명확화

신설 2025

[별표8] 출결상황 관리

5.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경우, 해당 학생의 출결을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사유 |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지침 명확화

신설

2025

마.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출결 처리

7)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전문·심화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도록 한 경우, 해당 학생의 출결을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 학생이 하루 중 일부 교시는 소속교에 출석하고 일부 교시는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소속교의 출결상황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출결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일일 출결을 처리해야 함.

제8조 출결상황

해설 고 p.65

사유 | 출결상황 특기사항 입력 내용 관련 재구조화(기재요령 내용 해설로 위치 변경)

2024

1. 제8조(출결상황)

바. '특기사항'에는 질병·미인정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 횟수가 많은 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수정

2025

1. 제8조(출결상황)

카. '특기사항'에는 **개근 또는** 질병·미인정으로 인한 장기결석,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 **개근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이며, 교내에서 개근상·정근상 수상대상자의 수상 여부의 판단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횟수가 많은 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별표 8 출결상황

해설 고 p.67

사유 |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범위 확대 및 처리 간소화

2024

- 5)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와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한다.

수정

2025

- 6)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①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거나, ② 전국(소년) 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출석인정 결석 일수(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를 초과하여 허용하는 때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교육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함.

제8조 출결상황

기재요령 고 p.74~75

사유 | 학생 선수 중 출석인정 결석 처리대상 확대에 따른 지침 명확화

2024

④ 기타

가.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가대표* 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과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단 명시)을 근거로 하며 꿈나무, 청소년대표, 후보자 훈련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아니므로, 출석인정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수정

2025

④ 기타

가.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1) 별표 8 '제2조 나목'의 3)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학생선수가 ①국가대표(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포함)로서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②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하다.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장소, 명단 명시 등)에 근거하여 처리함.**(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3111(2024.11.13.) 참고

※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 국가대표(**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포함**)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제8조 출결상황

해설 고 p.67~68

사유 | 생리 결석의 월 1일 산정 기준을 학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

2024

나. 결석

10)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수정

2025

나. 결석

10)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월 1일을 산정하는 기준은 지각·조퇴·결과 횟수 및 인정 시간 등을 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사유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출결처리 지침 신설

신설

2025

나. 결석

- 2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 조치 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학교 외의 장소에서 학생을 ‘분리 조치’하게 될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22)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학생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참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23)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2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24) 동일 사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모든 조치를 이행 해야 함 (A교 전출→B교 전입. 전출→C교 전입). 이때, 중간 과정 학교(B교) 수업일은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가정학습 등을 실시하고,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25)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의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에 해당한다.

제8조 출결상황

해설 고 p.69

사유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과목출석률 산정 방법 반영

2024

다. 지각·조퇴·결과

- 1)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2) 기타 출결관련 용어

신설 2025

다. 지각·조퇴·결과

- 1)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관련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2) **고등학교는 2025학년도 1학년부터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외에도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출석률(실제 운영한 수업 횟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목 담당교사는 매시간 학생의 수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나이스에 입력해야 한다. (단, 출석인정 결석(결과)의 경우, 출석으로 반영)
※ 학교는 출결관련 규정에 결과처리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정확한 출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3248(2024.9.12.) '2025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 안내' 참고**

제8조

출결상황

해설 고 p.70

사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해설 수정 및 재구조화
(원격수업에서 출결과 평가를 개별 항목으로 분리)

2024

라.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의 출결 등 처리

1)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교과별(학년별) 협의회 등에서 원격수업의 출결·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

※ 학년 초(또는 학기 초) 계획 수립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학기 중 계획 수립 가능

2) 출결 처리: 출결 확인은 원격수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교과담당교사가 당일 매 교시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매 교시별 출석확인이 어려운 경우 콘텐츠 활용과 과제 수행 중임 수업의 출결은 3일 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할 수 있다. 출결 마감은 학급 담임교사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월 단위로 할 수 있다.

※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출결(마감) 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제시된 3일은 학교장 임의 변경 불가하며 수업일 기준(휴업일 제외)임. 예) 목요일 수업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까지를 의미함.

※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 곤란 등 물리적 환경에 따라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대체학습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함.

※ 실시간 조·종례 운영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출결 관리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 운영함.

<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 (중략)

*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하여 기록함.

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처리: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

수정

2025

라.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의 출결 등 처리

1)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원격수업 운영이 필요한 경우, 교과별(학년별) 협의회 등에서 원격수업 운영 계획(출결·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한 내용 포함)을 마련하고, 원격수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 가능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744(2023.1.27.)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 안내' 참조

2) 출결 확인은 등교 수업에 준하여 처리하되,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접속 불량 등으로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출결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3) 원격수업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원격수업에서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 활동을 기재할 수 있다.

제8조 출결상황

기재요령 고 p.77

사유 |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른 과목출석률 처리 방법 반영

신설 2025

④ 기타

마.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른 출결처리 방법

1) 2025학년도 1학년으로 학기 중에 전·편입학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목별 출석률을 산출한다.

가) 원적교와 전·편입교의 과목이 같은(유사) 경우 원적교의 결과 횟수를 전·편입교 출석에 반영하여 출석률을 산출하되, 학점이 다른 경우에는 환산하여 반영한다.

[연계 과목 결과 횟수 반영 환산식]

$$\frac{\text{원적교 해당 과목의 전출일까지의 총 결과 횟수}}{\text{원적교 해당 과목의 학점}} \times \text{전편입교 해당 과목의 학점}$$

예) 원적교의 '확률과 통계' 과목의 전출일까지의 총 결과 횟수가 10회이고, 원적교의 '확률과 통계'(3학점) 과목을 전·편입교 '확률과 통계'(4학점)로 연계하여 과목출석률을 산출하는 경우, $10 \times \frac{4}{3} = 13.33..$ 으로 13회를 반영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사유 |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른 과목출석률 처리 방법 반영

신설

2025

나) 원적교와 전·편입교 간 과목이 일치하지 않아 신규 수강과목으로 보아 출석률을 산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강과목의 평균 결과 횟수를 산출하여 신규 수강과목에 반영한다.

[평균 결과 횟수 반영 환산식]

$$\frac{\text{원적교 전체 수강과목(창의적 체험활동 포함)의 전출일까지의 총 결과 횟수}}{\text{원적교 전체 수강과목(창의적 체험활동 포함)의 전출일까지의 총 수업 횟수}} \times \text{전·편입교 기준 신규 수강과목의 전·편입일 전일까지의 총 수업 횟수}$$

예) 원적교에서 전출일까지 수강한 과목(창의적 체험활동 포함)의 총 수업 횟수가 128회이고 10회 결과한 학생의 전·편입교 기준 신규 수강과목의 총 수업 횟수가 12회인 경우, $10/128 \times 12 = 0.9375$ 이므로 신규 수강과목에 대해 1회의 결과 횟수 반영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학기 중 재입학, 복학 등 학적 변동자, 위탁교육을 마치고 복교한 학생도 위의 가), 나)의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라) 귀국학생이 학기 중 편입학하는 경우의 과목출석률은 입급일로부터 학기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횟수의 2/3이상으로 한다.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기재요령 고 p.111

사유 | 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 관련 정의 명확화, 학교 밖 교육 '기관 유형' 작성 방침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2024

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2)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학교 밖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운영 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기업 및 사설 기관 제외)으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기관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계획, ②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 학교 밖 교육기관의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수정 및 신설

2025

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2)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학교 밖 교육: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대학 등 지역사회기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이며, 학생은 학교 밖 교육을 통해 고등학교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수할 수 있음

※ 필요 입력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②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와 주관, ③ 국내활동

※ 학교 밖 교육기관의 '기관명'은 입력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기관 유형*)'으로 통칭하여 입력함

* 교육청, 대학, 지역사회기관, 기업

<참고>

- 교육청: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포함
- 지역사회기관: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 한함
-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운영교에 한하여 기재 가능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기재요령 고 p.113

사유 | 학생이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반영

2024

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표와 같다.

영역	시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자율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행사활동은 별도 행사시수 포함)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	⋮

수정 및 신설

2025

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표와 같다.

영역	시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자율· 자치활동 (2~3학년은 자율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행사활동은 별도 행사시수 포함) ※ 학생이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 체험활동으로 이수한 시수 포함(1학년)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시·도교육감이 승인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 체험활동
⋮	⋮	⋮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기재요령 고 p.114

사유 |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 반영

2024

②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신설

2025

②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1학년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인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활동의 이수시간을 인정하며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학점(18학점)의 충족 여부는 아래 표의 산식과 같이 계산한다.

※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3248(2024.9.12.) '2025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 안내' 참고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학점(18학점) 충족 기준

학생이 학교 내 및 학교 밖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시수* 가 2/3이상일 경우 이수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 1학년 학생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미도달(예상) 학생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주관한 체험활동 시수, 타 고등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 시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음. 단, 해당 시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년별로 반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졸업에 필요한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시간을 산정할 때에만 활용되므로 졸업 사정 자료로 별도 관리해야 함.

<예시> A학생이 3년간의 정규교육과정 시수인 310시간 중 2/3에 해당하는 207시간 이상을 이수한 경우, 18학점 취득

사유 |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 반영

신설

2025

【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기준 】

② 전출입시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학점(18학점) 충족 기준

※ 예) 고등학교 3년간 전입학이 2번 발생한 학생(총 A, B, C교 재학)

학생이 학교 내 및 학교 밖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시수* 가 2/3이상일 경우 이수
C교(최종교)가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 1학년 학생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미도달(예상) 학생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주관한 체험활동 시수, 타 고등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 시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음. 단, 해당 시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년별로 반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졸업에 필요한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시간을 산정할 때에만 활용되므로 졸업 사정 자료로 별도 관리해야 함

③ 학생이 학교 내 및 학교 밖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시수가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초과한 경우, 해당 학생은 3년간의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 학점(18학점)과는 별개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추가로 이수한 것으로 보고, 총 이수 학점을 산정할 수 있음(16시간 이수 시, 1학점 부여)

<예시> B학생의 학교 내 및 학교 밖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총합이 소속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한 시수보다 47시간이 많은 경우, 총 20학점 취득

⇒ 18학점+2학점(47시간÷16시간=2.9375)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버림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개정 사항 반영

신설

2025

③ 특기사항

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한 진로연계교육*은 해당 활동의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1학년)

* 학생이 상급 학교나 학년으로 진학하기 전에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습의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육(「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마.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1학년)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기재요령 고 p.119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재구조화 반영

2024

⑦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신설

2025

⑦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 1학년 >

-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봉사활동의 성격과 취지에 적합한 봉사활동 실적만 입력한다.

< 예시 > (자율·자치활동 연계) 학급자치회 주관 생태·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

- 학급자치활동을 3시간 운영(학급회의 2시간, 생태·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 1시간)한 경우, 전체 시간(3시간) 중 실제 봉사활동을 실시한 시간(1시간)만 '봉사활동 실적'에 연계 입력해야 함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기재요령 고 p.120

사유

2022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재구조화 반영

2024

⑦ 봉사활동 실적

3) '활동 내용'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신설

2025

⑦ 봉사활동 실적

3) '활동 내용'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또한, '활동 내용'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명'은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만 입력한다(1학년).

<예시> (자율·자치활동) 학급자치회 주관 생태·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

< 기재 방법 >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영역 내 활동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1학년 >

①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 내):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 자율·자치활동(자율활동)관리/동아리활동관리/진로활동관리]에서 조회 후 기록

※ 각 영역별 누가기록 시, '일괄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봉사활동' 입력 창이 활성화되고, 입력된 내용은 '봉사활동실적관리' 탭으로 자동 연동되어 누가 기록됨

②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 이외),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실적관리]

< 2~3학년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실적관리]에서 조회 후 기록

제13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기재요령 고 p.121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재구조화 반영

2024

⑦ 봉사활동 실적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신설

2025

⑦ 봉사활동 실적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단, 1학년은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정규교육과정 내)의 각 영역과 연계된 계획'으로 운영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란에 표시됨.

< 1학년 >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영역 내 활동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봉사활동 실적'은 학생의 봉사활동 전체 실적(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을 표시한 것임.

<예시> 학급자치회 주관 생태·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 1시간 운영⇒자율·자치활동으로 1시간 인정, '봉사활동 실적'란에는 봉사활동 내역이 연계 입력*됨

* 봉사활동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시수와 중복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할 것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반영

신설

2025

제13조2(일상생활 활동상황)

- ①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일상생활 활동 영역별 활동 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한다.
- ② 학생이 이수한 일상생활 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영역별로 입력하되, 이수시간은 입력하지 않는다.
- ③ 제2항에 따른 영역별 누가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영역별 담당 교사가 수시로 관찰한 활동 내용,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3조의2 일상생활 활동상황

해설 고 p.126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반영

신설

2025

1. 제13조2(일상생활 활동상황)

- 가. 일상생활 활동은 해당 활동 담당교사가 평가하고, 평소의 활동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특기사항'에 문장으로 입력한다.
- 나. 일상생활 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이수한 일상생활 활동 영역별로 입력하고, 활동 내용이 우수한 사항(활동 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반영

신설

2025

① 일상생활 활동상황

가. 일상생활 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하여 기록한다.

② 특기사항

가. 일상생활 활동상황의 특기사항은 활동 내용(활동실적, 행동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함.

나. 일상생활 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 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정기적인 지각, 결과, 조퇴 학생의 경우: 정기적인 00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훈령 고 p.128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훈령 개정

2024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은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
 2.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전문 교과Ⅱ, Ⅲ: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3. 보통 교과의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

수정

2025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1. 보통 교과 **사회·과학 교과(군)의 융합 선택 과목**(‘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
 2.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제외):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
 3. 보통 교과 교양 교과(군)의 과목: ‘교과’, ‘과목’, ‘**학점**’, ‘**이수여부**’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훈령 고 p.128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훈령 개정

2024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 밖 교육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 및 전문교과Ⅱ의 실무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 1. 체육·예술 교과(군):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 2. 전문 교과Ⅱ의 실무과목: 능력단위 기반의 과목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수정

2025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과목 개설 유형(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과목 이수 상황(출석을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 미이수, 대체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 교과(군) 및 전문 교과Ⅱ의 전공 실무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 1. 체육·예술 교과(군):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
 - 2. 전문 교과Ⅱ의 전공 실무과목: 능력단위별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훈령 고 p.128~129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훈령 개정

2024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⑧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다만, 교양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 시에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성취도별 분포비율'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 'P'를 입력한다.
- ⑨ < 삭제 >
- ⑩ 전문 교과 I 및 보통 교과[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는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수정

2025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⑧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학점**을 입력하고, '**이수여부**'란에는 'P'를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 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란에는 'P'를 입력한다.
- ⑨ < 삭제 >
- ⑩ 제4항에 따라 석차등급을 산출하는 과목 중 수강자수가 **5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한다. 다만, **동일 입학년도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과목인 경우에는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훈령 고 p.129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훈령 개정

2024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⑮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 ⑯ 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를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 ⑰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는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5항, 제16항의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본다.

수정 및 신설

2025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 ⑮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은 제4항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되, '석차등급'란에는 '.'을 입력한다.
- ⑯ 고등학교에서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 ⑰ 삭제
- ⑲ 고등학교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성적을 입력한다.

사유 | '평가의 목표 및 방침'에 대한 내용 명확화

2024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평가의 목표 및 방침

- 나. 각급 학교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다.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하거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필 및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정

2025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평가의 목표 및 방침

- 나.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교과학습의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시도교육감은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를 준거로 학교급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수립한다.
- 라.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교과(학년)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사유 | 기존 ‘주요 용어 정의’는 훈령 해설로 이동, 평가 목표 및 방침에 있었던 ‘평가 운영의 유의사항’ 내용은 별도 항목으로 신설

2024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2. 주요 용어 정의 (⇒ 훈령 해설로 이동)

신설

2025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2. 평가 운영의 유의사항

- 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실제 평가의 상황에서 준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재구조화할 수 있다. 다만,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을 압축하여 재구조화할 경우, 성취기준의 내용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부 내용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학년(군), 학교급 및 교과(군)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내 학교 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다. 부정행위 예방 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고,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 라.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부모 교직원이 재직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년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평가 관리 등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유 |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의미 명확화

2024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중학교 고등학교 평가 방법

나. 평가 운영

- 4)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수정

2025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나. 평가 운영

- 4)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시간 외 가정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별표9

교과학습발달상황

훈령 별표9 고 p.131

사유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내 소수점 처리 방식 명시,
추정분할점수 설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해당 기능 사용 의무화

2024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라.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 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여 각 호와 같이 성적을 산출한다.
- 가) 교양교과(군)의 과목 및 나~마)호를 제외한 모든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 나) 보통 교과와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한다.

수정

2025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라.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 1)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과목 담당교사가 작성한다. 이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영역(고사)별 반영 비율에 따른 환산 점수 합계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또한, 원점수는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하고, 과목평균은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되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3) 과목별[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및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제외) 제외]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단, 추정분할점수 설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의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에 대한 성취도별 성취율 변경

2024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수정

2025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라.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 성취율 40% 미도달자 중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이수 시 성취도 'E' 부여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석차 5등급제 개편에 따른 변화 반영

2024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이하
2등급	4%초과 ~ 11%이하
3등급	11%초과 ~ 23%이하
4등급	23%초과 ~ 40%이하
5등급	40%초과 ~ 60%이하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6등급	60%초과 ~ 77%이하
7등급	77%초과 ~ 89%이하
8등급	89%초과 ~ 96%이하
9등급	96%초과 ~ 100%이하

수정

2025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라.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 결과 처리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10% 이하
2등급	10%초과 ~ 34%이하
3등급	34% 초과 ~ 66%이하
4등급	66%초과 ~ 90%이하
5등급	90%초과 ~ 100%이하

사유 | 고등학교 성적 처리 방식 의미 명확화

2024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6)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나)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성취도 또는 이수여부를 기록한다.

다)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바) 학점제를 적용받는 고등학교에 편성된 국어·수학·영어의 공통과목,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운영의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수정 및 삭제

2025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4. 중학교·고등학교 평가 방법

6)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환산 점수 합계를 사용하여 산출하되,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이때 수강자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삭제

바) 삭제

사유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2024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5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8)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관한 사항

9)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일상생활 활동상황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사유

기존 훈령 [별표8] 출결상황 관리에 있던 소속학교 원격수업과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 과목의 평가 관련 내용을 [별표9]로 이동 및 정리

신설

2025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 기타

바.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 각 호에 유의하여 평가를 시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 1)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다.

사. 소속 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 수강한 과목은 각 호에 따라 성적을 산출한다.

- 1) 위탁학생의 소속 학교는 위탁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을 입력하되, 구체적인 반영 비율 및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2) 위탁교육기관이 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적교에서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른다.
- 3)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을 위탁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37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성적 산출 방식 변경 내용 반영

2024

1.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나. 보통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등급-9등급)'으로, 전문교과는 '성취도(A-B-C-D-E)'로 성적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수정

2025

1.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가.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등급~5등급)'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24년 고 p.120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성적 산출 방식 변경 내용 반영

2024

구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보통 교과	공통 과목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 미산출
	일반 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교양	○	○	5단계	○	○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예술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 기초/탐구/생활·교양/체육·예술	○	○	- ※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3단계	○	-	•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I·II' 포함 •교양 교과(군) 제외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삭제,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교양 교과(군)	-	-	-	P	-	P	
	전문교과 I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문교과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전문교과III	○	○	○	5단계	○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음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함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또는 '○등급'	•보통교과 공통과목 과학탐구실험,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공동교육과정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밖 교육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전문교과II	·	·	·	·	·	·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 표기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37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성적 산출 방식 변경 내용 반영

수정

2025

구분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	
보통 교과	공통 과목	○	○	5단계	○	5등급	○	
	과학탐구실험	-	-	3단계	-	-	-	
	선택 과목	○	○	5단계	○	5등급	○	•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포함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교과(군) 융합 선택	○	○	5단계	○	‘,’	○	•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만 해당함
	체육·예술 교과(군)	-	-	3단계	-	-	-	•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체육·예술 교과(군) 선택 과목 제외
	교양 교과(군)	-	-	P	-	-	-	• 교양 교과(군)의 P는 성취도가 아닌 ‘이수여부’ 란에 입력
전문교과		○	○	5단계	○	5등급	○	
특수교육 전문 교과		○	○	5단계	○	‘,’	○	•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 전문 교과로 개설시에도 ‘석차등급’ 미산출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중 수강자수 5명 이하인 과목		○	○	5단계	○	‘,’ 또는 ‘5등급’	○	•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체육·예술 교과(군) 선택 과목 제외),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		○	○	5단계	○	‘,’	○	•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체육·예술 교과(군) 선택 과목 제외),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밖 교육		‘,’	‘,’	‘,’	‘,’	‘,’	‘,’	•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 표기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38

사유 | 훈령 순서에 맞춰 공동교육과정 내용의 위치 이동, 관련 내용 의미 명확화

2024

다. 평가 방법

2) 평가 운영

가) 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

(1)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특성화고등학교 등).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의미함.

(2)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

수정 2025

나.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에서 개설한 이수 과목의 '석차등급'에는 '·'을 입력하며, '비고'에는 각각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으로 표시된다.

1) 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

(가) 거점학교에서 **는** 공동교육과정**의**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특성화고등학교 등).

※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의미함.

(나) 본교(거점학교)와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을 **산출한다.**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38

사유 | 일반고와 직업계고 학교 밖 교육 성적 처리 방식 통일, 학교 밖 교육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방법 변경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결과처리

너) 학교 밖 교육 성적처리 방식

(1) 일반고등학교 학교 밖 교육: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및 고시 외 과목 포함),

교양 교과(군)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단위 이수함.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과의 학교 밖 교육: 전문교과II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명: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직무분야(예: 기계, 디자인, 재료, 전자 등)를 ○학점 이수함.

수정

2025

다. ‘학교 밖 교육’으로 이수한 과목의 ‘비고’에는 자동으로 ‘학교 밖 교육’이 표시된다.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교과’, ‘과목’, ‘**학점**’ 및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이외 항목은 모두 ‘.’을 입력한다.

다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객관적 교육내용(**과목명, 이수학점, 객관적 학습내용**)만을 입력한다.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항공우주학 기초 탐구: 학교 밖 교육(대학)을 통해 2학점 이수함. 태양계의 행성, 별의 진화, 우주의 구조에 대한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별자리와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 방법을 학습함. 또한 로켓이 뉴턴의 제3법칙에 따라 추진되는 원리, 고체와 액체 연료의 차이, 다단계 로켓의 작동 방식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위성이나 우주선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로켓의 구조와 발사 과정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를 배움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 학교 밖 교육(지역사회기관)을 통해 2학점 이수함. 모뎀 활동에서 슬라이싱 된 파일을 활용하여 가상 적층을 실시하고 슬라이싱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학습함. 슬라이서 프로그램의 3D프린터 설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기타 설정값을 활용하여 슬라이싱 된 파일과 기준값으로 G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움.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38

사유 |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른 '비고' 내용 추가 반영

신설 2025

1.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라.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라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 '미이수', '대체이수'한 학생의 경우 해당 과목의 '비고'에는 자동으로 각각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 '미이수', '대체이수'로 표시된다.

사유 | 1형 당뇨병 학생의 시험 응시 시 배려사항 관련 내용 추가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가. 평가의 목표 및 방침

- 8) 부정행위 예방대책은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감독 및 고사실 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고사 시행 방법,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처리 및 지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련자 성적관련 처리기준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포함하고, 관련자 징계규정은 ‘학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나. 평가 운영의 유의사항

- 3) 부정행위 예방대책은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감독 및 고사실 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고사 시행 방법,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처리 및 지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련자 성적관련 처리기준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포함하고, 관련자 징계규정은 ‘학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 1형 당뇨병으로 고사 시 혈당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의료지원기기와 전자기기 반입을 교사 확인을 거쳐 허용하고, 필요시 시험 중 인슐린 주사 및 당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1476,('24.4.11.))

사유 | 기존 훈령의 '주요용어 정의' 내용 및 평가 관련 용어를 훈령 해설에 반영

수정

2025

[주요 용어 정리]

- (성취평가제)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가라는 평가의 본래적 의미를 강조하는 평가제도
- (성취기준) 각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등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써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 됨
- (성취수준) 학습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각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3~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한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것으로 성취기준별 성취수준 및 영역별 성취수준으로 구성
- (영역별 성취수준)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에 도달한 정도를 수준별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한 것
- (학기 단위 성취수준) 학생이 한 학기 동안 학습한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종합하여 나타내는 지표로서, 과목 내 성취기준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한 학기 동안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 및 평가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최소 성취수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함
- (지필평가) '중간 또는 기말고사(1회, 2회고사 등)'와 같은 '일제식 정기고사'를 의미하며, '문항정보표'의 구성에 따라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구분. 단,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는 수행평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택형' 및 '서답형'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는 본 훈령의 '지필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 지필평가 문항 중 선택형 문항(진위형, 배합형, 선다형), 서답형 문항(완성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의 구분은 「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서(툇아보기)」 자료 참고
- (수행평가) 교과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법
 - ※ 수행평가과제 유형은 「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서(툇아보기)」 자료를 참고
 - (예) 서술·논술, 구술·발표, 토의·토론, 프로젝트, 실험·실습, 포트폴리오 등
 - ※ 수행평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짐
 - 가) 학습과제: 학습자들에게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상 각 교과 교육목표와 관련되는 것으로, 실제 생활에 가치 있고 중요하며 유용한 과제를 의미
 - 나) 수행: 학생이 단순히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답을 구성하는 것, 산출물이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태도나 가치관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등을 모두 포함
 - 다) 관찰: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평가자가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
 - 라) 판단: 평가자가 관찰한 것을 객관성·합리성·타당성·신뢰성 등이 있는 기준을 준거로 점수화하거나, 문장화하는 것을 의미

사유 | 성취평가제 내실화 차원에서 ‘학기 단위 성취수준 설정’ 추가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가)

-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 (2)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 (3)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4)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및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 (5)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수정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가)

-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등
- (2)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등
- (3)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4) 과목별 학기 단위 성취수준 설정(최소 성취수준 설정 포함)**
- (5)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 기준 등

사유 | 기출문제 공개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명시화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다)

※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수정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다)

※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정답 포함)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학교 홈페이지 탑재, 교내 특정 장소 비치, 출력물 제공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41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용어 변경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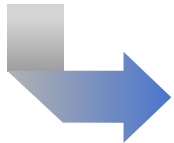
다.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라) 학기(학년)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교과교육과정에 포함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수정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라) 학기(학년)초에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을 마련(교과교육과정에 포함 혹은 별도 관리)하여 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42

사유 |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대입전형자료 제공 시 ‘과목 평가 정보’가 추가로 제공됨을 명시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나)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는 ‘성취도(A-B-C-D-E 또는 A-B-C)’와 ‘석차등급(1~5 등급)’을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학교는 지필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신설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는 ‘성취도(A-B-C-D-E)’와 ‘석차등급(1~5 등급)’을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전문교과 전공일반과목을 능력단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전공실무과목과 동일하게 능력단위로 산출함.

※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대입전형자료 제공 시 학생 개인별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정보([참고자료 10]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이외에 과목별 평가방식(지필/수행평가 반영 비율, 수행평가 영역명), 학기말 성취도별 분할점수가 추가로 제공됨(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108(2025.01.13))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43

사유 | 학기말 성적산출 기준일에 대한 기준 명확화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나)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처리 기준일은 교과(목)별 평가 계획 상 최종 시험일(기말고사, 2차 시험 등)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퇴학, 자퇴, 제적, 휴학 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수정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라)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에 따라 환산 점수 합계를 처리하는 '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일'은 교과(목)별 평가 계획 상 최종 시험일(기말고사, 2차 시험 등)이며, '명예졸업' 학생은 퇴학, 자퇴, 제적, 휴학 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사유 | 성적 일람표의 소수점 처리 방식 통일 및 관련 설명 명확화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예시> 고등학교 과목별 성적일람표 및 해석

- ‘전문교과Ⅱ, Ⅲ’ 성적일람표의 합계는 환산 점수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 과목평균·과목표준편차는 수강자 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 하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성취율의 기준 점수는 원점수로 한다.

수정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예시> 고등학교 과목별 성적일람표 및 해석

-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성적 일람표의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출하며, 이를 이용하여 석차, 동석차 및 석차등급을 구한다.
- 성적일람표에서 과목 표준편차는 미표기한다.
- 성취도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46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교과(군)별·과목별 성취도 반영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아) 교과별 평정 방식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 영역	적용 교과목		성취도
	교과(군)	과목	
- 기초(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 탐구(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 생활(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 - 전문 교과 I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 - 전문 교과 II, III - 체육·예술 - 기초, 탐구, 생활 - 전문 교과 I (과학 계열, 국제 계열) - 교양(철학, 논리학 등)		- 공통 과목, 일반 선택 - 공통 과목(과학탐구실험 제외), 일반 선택 - 일반 선택 -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제외	A, B, C, D, E
		전체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진로 선택, 공통 과목(과학탐구실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전체 과목	P

수정

2025

바)교과별 성취도 산출 방식(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		성취도
교과(군)	과목	
- 보통 교과의 교과(군)(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및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 전문 교과, 특수교육 전문교과	전체 과목(과학탐구실험 제외)	A, B, C, D, E
보통 교과의 체육, 예술(군)	전체 과목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 과학 교과(군)	- 전체 과목 ※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체육, 예술 교과(군) 과목) 제외	A, B, C
보통 교과의 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	
	전체 과목	P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46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석차 5등급 적용에 따른 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 반영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자) 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

(1) 수강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한다.

(2)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예시 자료(수강자수 178명인 경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누적인원	7.12	19.58	40.94	71.2	106.8	137.06	158.42	170.88	178
반올림값	7	20	41	71	107	137	158	171	178
등급인원	7	13	21	30	36	30	21	13	7

수정

2025

사) 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

(1) 수강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한다.

(2)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예시 자료(수강자수 178명인 경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누적비율	10%	34%	66%	90%	100%
누적인원	17.80	60.52	117.48	160.20	178
반올림값	18	61	117	160	178
등급인원	18	43	56	43	18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46

사유 | 과목별 분할점수 산출 시 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내용 반영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해당 과목에 대한 동점자처리규정 및 과목별 분할점수 산출방식을 명시한다.

신설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아)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해당 과목에 대한 동점자처리규정 및 과목별 분할점수 산출방식을 명시한다.

※ 과목별 분할점수 산출관리 및 분할점수 입력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성적-분할점수-분할점수 관리]를 반드시 활용함.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46

사유 | 중간석차 적용 방식 명확화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차) 중간석차 적용 방식

(1)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동점자(동석차)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동점자(동석차)가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수정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아)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해당 과목에 대한 동점자처리규정 및 과목별 분할점수 산출방식을 명시한다.

(1) 중간석차 적용 방식

(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의 동점자(동석차)처리규정 적용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동석차)가 발생했을 경우는 중간석차를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47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기 단위 과목 편성 원칙에 따라 기존 예시 삭제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수강자수 산정 방식

(1)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단위(학점)수,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음.

예) 각 학년이 한국사를 2단위씩 3개 학년에 걸쳐 편성하여, 특정 학기에 이수하는 단위수는 동일하나 학년별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학년별로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삭제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자) 수강자수 산정 방식

(1)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학점, 수강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 다만,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달리할 수 있음.

~~예) 각 학년이 한국사를 2단위씩 3개 학년에 걸쳐 편성하여, 특정 학기에 이수하는 단위수는 동일하나 학년별 학습내용과 성취기준이 달라 평가를 학년별로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49

사유 | 학점이수 인정기준 적용에 따른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반영

2024

출결상황 훈령 별표8(출결상황)

5. 소속 학교 이외 기관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53p)

수정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마. 기타

9)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나)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학점이수 인정기준**을 적용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영한다.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51

사유 | 기재요령 부분에서 훈령 해설로 이동, 훈령의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반영

2024

교과학습 발달상황 <기재요령>

③ 기타

마. 소년보호기관 위탁 학생의 재적교 평가 응시 방법

라) 학생이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평가기간 동안 출결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수정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마. 기타

10) 소년보호기관 위탁 학생의 성적처리 방식

(라) 학생이 미응시 할 경우, 결시 처리 방식은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51

사유 |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성적처리 방식 명확화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파)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성적처리 방식

(1)

(다)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일반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이수학생수를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다.

(2)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이 타학교 등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할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포함) 수강자수는 그 과목(과정)을 수강한 학생수로 하되, 계열이 다른 경우는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수정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11)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 성적처리 방식

가)

(2) 산업(정보)학교, 직업교육거점학교,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기관 등 직업교육 위탁과정 담당 기관에서 평가한 이수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수 등을** 학생이 재적한 학교에 통보하면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줄 수 있다.

나)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또는 직업교육센터 등,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및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직업교육 위탁과정으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학과)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학과)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51

사유 | 현장실습생의 성적처리는 교과목별 성적처리방식을 따르므로 문구 수정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3)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하)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방식

(1)

(가) 현장실습을 제외한 교과 성적은 학기별 종합 성적에 의하여 교과목별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등급 또는 성취도, 수강자수를 산출한다.

수정

2025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다. 평가 방법

12) 현장실습생 성적처리 방식

가)

(1) 현장실습을 제외한 교과 성적은 **교과목별 성적처리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24년 고 p.135

사유 | 학점이수 인정 기준 적용에 따라 '보충 학습 과정' 기재 불가 방침 적용

2024

2.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마. 기타

7)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가)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예)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한국사:	전입으로 인한 미이수 과목을 '보충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시간(2024.○○.○○.-2024.○○.○○.) 이수함.

<체육·예술(음악/미술)>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음악:	전입으로 인한 미이수 과목을 '보충 학습 과정'에 참여하여 ○○시간(2024.○○.○○.-2024.○○.○○.) 이수함.

※ '보충 학습 과정'을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으로 실시한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함.

삭제

2025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해설 고 p.153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석차 5등급제 적용에 따른 조건표 변경

2024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건표

인원/등급	1	2	3	4	5	6	7	8	9
1	0.04	0.11	0.23	0.40	0.60	0.77	0.89	0.96	1
2	0.08	0.22	0.46	0.80	1.20	1.54	1.78	1.92	2
3	0.12	0.33	0.69	1.20	1.80	2.31	2.67	2.88	3
4	0.16	0.44	0.92	1.60	2.40	3.08	3.56	3.84	4
5	0.20	0.55	1.15	2.00	3.00	3.85	4.45	4.80	5
6	0.24	0.66	1.38	2.40	3.60	4.62	5.34	5.76	6
7	0.28	0.77	1.61	2.80	4.20	5.39	6.23	6.72	7
8	0.32	0.88	1.84	3.20	4.80	6.16	7.12	7.68	8
9	0.36	0.99	2.07	3.60	5.40	6.93	8.01	8.64	9
10	0.40	1.10	2.30	4.00	6.00	7.70	8.90	9.60	10
11	0.44	1.21	2.53	4.40	6.60	8.47	9.79	10.56	11
12	0.48	1.32	2.76	4.80	7.20	9.24	10.68	11.52	12
13	0.52	1.43	2.99	5.20	7.80	10.01	11.57	12.48	13
14	0.56	1.54	3.22	5.60	8.40	10.78	12.46	13.44	14

1	2	3	4	5	6	7	8	9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2	2	2	1	1	
	1	2	1	3	1	2	1	
	1	2	2	2	2	2	1	
1		2	2	3	2	2		1
1	1	1	3	2	3	1	1	1

수정 2025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건표

인원/등급	1	2	3	4	5
1	0.10	0.34	0.66	0.90	1
2	0.20	0.68	1.32	1.80	2
3	0.30	1.02	1.98	2.70	3
4	0.40	1.36	2.64	3.60	4
5	0.50	1.70	3.30	4.50	5
6	0.60	2.04	3.96	5.40	6
7	0.70	2.38	4.62	6.30	7
8	0.80	2.72	5.28	7.20	8

1	2	3	4	5
		1		
	1		1	
	1	1	1	
	1	2	1	
1	1	1	2	
1	1	2	1	1
1	1	3	1	1
1	2	2	2	1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요령 24년 고 p.139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 수정

2024

학기	① 교과	과목	학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비고
이수학점 합계							

<진로 선택 과목>

학기	① 교과	과목	학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등급	비고
이수학점 합계							

<체육·예술>

학기	① 교과	과목	학점수	성취도	비고
이수학점 합계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요령 고 p.155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 수정

수정

2025

학기	① 교과	과목	학점수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	비고
1									
2									
이수학점 합계									

※ 성취도별 분포비율의 E비율 내에는 미이수자가 포함되어 있음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학기	①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	비고
1					
2					
이수학점 합계					

<교양교과>

학기	① 교과	과목	학점	이수여부	비고
1					
2					
이수학점 합계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요령 고 p.156

사유 | 학점이수 인정기준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내용 신설

신설

2025

① 교과

라. 학점이수 인정기준에 따른 교과학습 발달상황 기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한 경우

→ 해당 과목을 이수 처리하고, 성취도란에 'E'(성취도 3단계 산출과목은 'C')를 기재(보충학습 여부 미기재)

학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 등급	수강자수	비고
1	국어	문학	3	39/70	E	A(11.2) B(24.3) C(31.7) D(24.3) E(8.5)	5	60	

※ 과목 출석률 2/3 미만인 경우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한 경우도 포함

2) 학업 성취율은 이수기준을 충족(40% 이상)하지만 출석률이 2/3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

→ 해당 과목을 이수 처리하고, 성취한 성취도 입력 및 비고란에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 기재

학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 등급	수강자수	비고
1	국어	문학	3	93/70	A	A(11.2) B(24.3) C(31.7) D(24.3) E(8.5)	1	60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

※ 교양과목의 출석률 2/3 미만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요령 고 p.157

사유 | 학점이수 인정기준에 따른 내용 신설

신설

2025

3)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대상자(학업성취율 40% 미만 또는 출석률 2/3 미만)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목을 미이수 처리하고 비교란에 '미이수' 기재,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미기재**

학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 등급	수강자수	비고
1	국어	문학	-	-	-	-	-	-	미이수

4) 공통수학1, 공통영어1를 수강하였으나 미이수한 학생이 기본수학1, 기본영어1를 대체이수한 경우

→ 해당 과목을 대체이수 처리하고, 이전 학기에 미이수 처리한 공통수학1, 공통영어1의 성적처리 결과 전부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통해 삭제 처리

학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 등급	수강자수	비고
1	수학	공통 수학1	-	-	-	-	-	-	미이수
2	수학	기본 수학1	3	74/68	B	A(11.2) B(24.3) C(31.7) D(24.3) E(8.5)	3	89	대체이수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요령 고 p.158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의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항목 변경

2024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항목	내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공통과목 보충 학습 과정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오프라인의 방법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했는데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수강하였으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성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이수내용 기재)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다만, 전·편입학, 귀국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온라인 보충과정을 통해 수강한 내용은 기재 불가

수정

2025

항목	내용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학력인정 대안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 산출 방식이 전입교와 다른 경우
영재교육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명교육	당해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당해 학기에 현장실습을 전문교과에 포함하지 않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량 유연화' 미적용 상황 반영

2024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 '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함.

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나)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삭제

2025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요령 고 p.158

사유 | '온라인 수업' 성적처리 관련 내용 간략화

2024

③ 기타

가.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

1)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

가)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나)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문장으로 이수 내용(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만을 입력한다.

다) 전·편입학 및 귀국 등으로 공통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입력방법은 별표 9의 해설 '마목의 7)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교과목 보충 학습 과정 입력 방식 참조).

수정

2025

③ 기타

가. 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수업) 성적처리 및 입력 방식

1)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성적을 처리한다.(구체적인 성적 산출 방식은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 149쪽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참고)

사유 | 학적변동자 성적처리 방식 명확화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사례로 변경

수정

2025

라. 학적변동자 성적처리 방식

- 1) 학적변동으로 인해 이전의 훈령을 적용받는 학생의 성적은 복학 등의 시점 당시 훈령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을 적용하여 이전학기 성적이 그대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연동되고 ‘비고’에 해당 사유가 자동 명시된다. 다만, 학교는 기존 출력물을 함께 보관한다.
- 2) 훈령 제477호(2024.3.1.)의 적용을 받았던 학생이 복학 등의 사유로 제504호(2025.3.1.)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전 훈령에 적용받은 성적은 훈령 제504호(2025.3.1.)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으로 이전 학기의 성적이 그대로 연동되고, ‘비고’에 그 ‘사유’가 자동 명시된다. 다만, 학교는 기존 출력물을 함께 보관한다.

<예시> 2024학년도 신입생이 1학기 종료 후 휴학하였다가 2025학년도 2학기에 복학한 경우

- (1) 1학기에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 ‘체육·예술’, ‘교양교과’를 제외한 과목은 ‘훈령 제504호(2025.3.1.)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으로 이전에 산출된 성적산출 정보만 그대로 연동되고 ‘비고’에 ‘사유(복학 등)’가 자동 명시됨.
- (2) 1학기에 이수한 ‘진로선택과목’은 이전 양식에 <‘진로선택과목’>부분이 아니라, 훈령 제504호(2025.3.1.)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으로 이전에 산출된 성적산출 정보만 그대로 연동되고 ‘비고’에 ‘사유(복학 등)’가 자동 명시됨.
- (3) 1학기에 이수한 ‘과학탐구실험’과 ‘진로 선택 과목 중 체육·예술’은 이전 양식이 아니라, 훈령 제504호(2025.3.1.)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 중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부분으로 이전에 산출된 성적산출 정보 중 그대로 연동하되, 대응이 되지 않는 성적산출 정보는 삭제하고 ‘비고’에 ‘사유(복학 등)’가 자동 명시됨.
- (4) 1학기에 이수한 ‘교양교과’는 이전 ‘성취도(수강자수)’와 ‘석차등급’란에 각각 ‘P’가 입력된 양식이 아니라, 훈령 제504호(2025.3.1.)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 중 <교양교과>부분의 ‘이수여부’란에 ‘P’가 연동됨.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요령 고 p.161

사유 | 학적변동자 성적처리 방식 명확화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사례로 변경

수정

2025

<예시> [1학년]

학기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 등급	수강자수	비고
1	...	...	...	...	...	...	...	...	
	국어	국어	4	90/77.1(5.2)	A		1	310	복학
	경영·금융	상업 경제	3	86/70.4(10.1)	B			150	복학
	수학	실용 수학	2	88/73.1	A	A(30.2) B(45.3) C(24.5)	1	310	복학
2	국어	공통국어2	4	92/76.1	A	A(10.2) B(30.3) C(28.1) D(20.8) E(10.6)	1	292	
	경영·금융	사무 관리	3	88/75.6	B	A(17.6) B(28.4) C(25.1) D(19.7) E(9.2)	2	145	
	사회	여행지리	4	91/72.1	A	A(9.8) B(28.1) C(30.1) D(21.7) E(10.3)	1	145	
	...	...	...	...	...	...	...	...	
이수학점 합계									

제15조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요령 고 p.161

사유 | 학적변동자 성적처리 방식 명확화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사례로 변경

수정

2025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

학기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	비고
1	...	...	...	...	...
	과학	과학탐구실험	1	A(310)	복학
	체육	스포츠 생활	2	A(310)	복학
2	과학	과학탐구실험	1	A	
	체육	체육2	2	A	
	...	...	...	...	
이수학점 합계					

<교양교과>

학기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	비고
1	...	...	...	...	...
	교양	철학	1	P	복학
2	교양	진로와 직업	2	P	
	...	...	...	...	
이수학점 합계					

제16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해설 고 p.203

사유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내용의 명확화

2024

1.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나.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수정

2025

1.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 학생의 행동특성에 관한 누가기록을 참고하여 입력하고, 학생의 성장 정도, 특기사항, 발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다만, 학생의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제19조 자료의 정정

훈령 고 p.211

사유 |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기 단위 과목 편성·운영에 따른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마감일 변경

2024

제19조(자료의 정정)

- ①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신설

2025

제19조(자료의 정정)

- ①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고등학교 1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당해 학년도의 8월 31일까지 작성을 마감한다.

제19조 자료의 정정

해설 고 p.213

사유 |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 정정 가능 사유 보완

2024

제19조(자료의 정정)

가.-(중략)-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 및 삭제

2025

제19조(자료의 정정)

가.-(중략)-

1) 서술형 항목의 정정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1)에 따른 정정 외에도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다음 3가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년도의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물 등을 바탕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가)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동일한 경우

나)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학생 간에 뒤바뀐 경우

다) 서술형 항목의 영역별 기재 내용 전체가 누락 된 경우

3) 학교가 2)에 따른 사안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사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정정 필요 시 정정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 기재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정 내용은 1차적으로 해당 학년도의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하며, 만약 입력 주체의 부재(전근, 퇴직, 사망, 연락 두절 등)로 인해 정정 내용에 대한 초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정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정 내용을 결정한다.

※ 다만, 입력 주체의 전근은 가급적 공문을 통해 정정 내용에 대한 초안을 송부받아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정 내용을 결정하도록 함.

사유 |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내용 신설

신설

2025

제20조의2(상업적 이용 제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사유 | 평가관리센터 설치·운영 내용 신설

신설

2025

제20조의3(평가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 ①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15조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를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가관리센터와 시도평가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평가관리센터와 시도평가관리센터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평가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평가를 연구·지원하는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감사합니다

